

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제326회 임시회

2014.01.21.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4년 01월 08일

○ 회부일자: 2014년 01월 09일

3. 제안이유

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137명으로 22명 증원(안 제2조)

나.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안 제4조, 별표3)

구 분	정원 변경사항			비고
	개정전	개정후	증감	
정무직공무원	1	1	0	교육감
일반직공무원	2,890	2,893	3	
연구직공무원	7	12	5	연구사
교육전문직원	217	231	14	
총 계	3,115	3,137	22	

다. 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을 “직위군”으로 수정(안 제4조)

라.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(안 제2조, 별표3, 별표4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및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에 따른 용어 수정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한 6명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을 “직위군”으로,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전문경력관 규정

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40호, 2013.12.30.]

- 제4조(직위군 구분)**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 직위"라 한다)의 군(이하 "직위군"이라 한다)은 직무의 특성·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,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12.30.] [법률 제12128호, 2013.12.30.]

-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**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-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